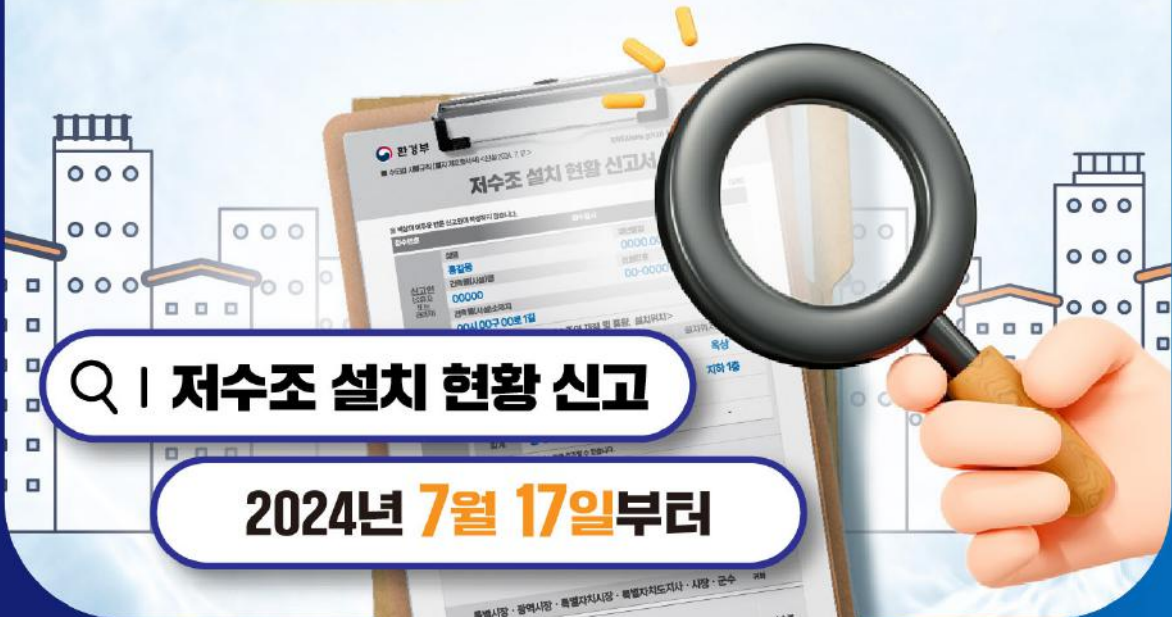


저수조를 설치하여
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

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



Q |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

2024년 7월 17일부터

2024년 7월 17일부터

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
위생관리를 강화하고

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

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.


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

**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
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
또는 시설*의 소유자나
관리자가 신고합니다.**

***연면적 5,000m² 이상 건축물,
5층 이상 아파트 등**

(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
각호에 해당하는 시설)

언제 신고해야 하나요?



법 시행 (2024. 7. 17.)

시행 이후
저수조를 신규로
설치한 경우



저수조
설치일로부터
30일 이내

시행 당시
저수조를 운영하고
있는 경우



시행일로부터
1년 이내
(~2025. 7. 16.)

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**정부24 이용 시**



정부24 민원서비스

저수조 설치 현황
신고서 작성

제출서류 첨부
저수조 시공도면

민원 신청

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**방문·우편·팩스 이용 시**



**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
양식 다운로드**
국가법령정보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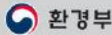
(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
**저수조 설치 현황
신고서 작성**

제출서류 첨부
저수조 시공도면

**일반수도사업자(지자체)에게
제출**

신고 서류는 이렇게 작성해주세요



■ 수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24. 7. 17.>

정부24(www.gov.kr)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[양쪽]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
신고인 [소유자 또는 관리자]	성명	선택필입		
	홍길동	0000.00.00.		
	건축물[시설행]	전화번호		
	00000	00-0000-0000		
	건축물[시설회사]	00시 00분 00초로 1길		
저수조 현황	<저수조의 재질 및 용량, 설치위치>			
	구분	용량(m ³)	재질(콘크리트, FRP 등)	설치위치(지상, 지하 등)
	저수조①	100	스테인리스	육상
	저수조②	200	FRP	지하 1층
	저수조③			
합계	총 300m ³ (총 2개)			
	※ 저수조가 4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			
사용승인일	2024. 7. 18.			

「수도법」 제3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합니다.

설치일로부터
30일 이내에 신고해주세요!

저수조 설치일(사용승인일)

2024. 7. 18.

신고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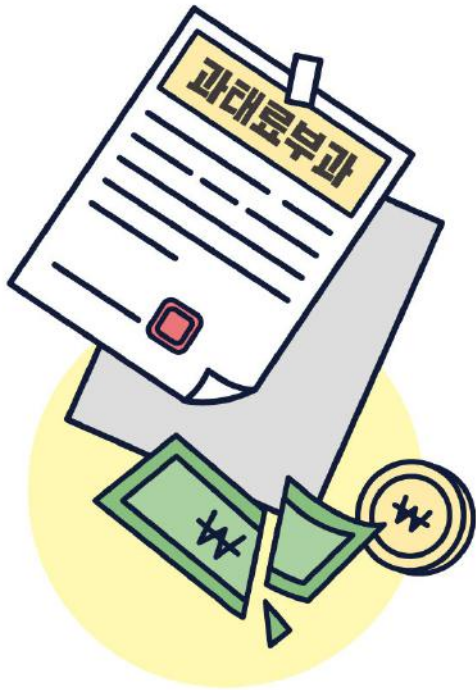
2024년 8월 1일

2024년 8월 1일

신고인 홍길동 홍길동

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귀하

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

신고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100만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1차 50만 원

2차 70만 원

3차 이상 100만 원



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!
다 함께 만들어가요!

